

## 연금저축계좌(집합투자증권)설정약관 업무개정대비표

1. 개정시행일 : 2026.03.19

2. 주요 내용

- ①이연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과 관련하여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율 인하 반영
- ②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한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사항(50%)을 약관에 추가

현 행	개 정 (안)	비 고												
<p><b>제 1조~17조 1.가 &lt;생략&gt;</b>  <b>나</b> 이연퇴직소득: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다음의 세액을 적용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제 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70%</td> </tr> <tr> <td>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<b>초과하는 경우</b></td> <td>제 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60%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신설&gt;</b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&lt;신설&gt;</b></td> </tr> </table> <p><b>17조 2~제 30조 &lt;생략&gt;</b>                      &lt;부칙&gt;                      1~13&lt;생략&gt;                      &lt;신설&gt;</p> <p>&lt;별첨&gt; &lt;생략&gt;</p>	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	제 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70%	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<b>초과하는 경우</b>	제 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60%	<b>&lt;신설&gt;</b>	<b>&lt;신설&gt;</b>	<p><b>제 1조~17조 1.가 &lt;좌동&gt;</b>  <b>나</b> 이연퇴직소득:연금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다음의 세액을 적용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">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</td> <td style="width: 50%;">제 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70%</td> </tr> <tr> <td>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<b>초과하고 20년 이하인 경우</b></td> <td>제 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60%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</b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제 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50%</b></td> </tr> </table> <p><b>17조 2~제 30조 &lt;좌동&gt;</b>                      &lt;부칙&gt;                      1~13&lt;좌동&gt;                      14. 제 1조(시행일) 이 약관은 2026년 03월 19일부터 시행한다.                      &lt;별첨&gt; &lt;좌동&gt;</p>	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	제 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70%	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<b>초과하고 20년 이하인 경우</b>	제 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60%	<b>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</b>	<b>제 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50%</b>	<p>소득세법개정 (소득세법§129①5의3, 연금소득의 원천징수세율 인하 등)으로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이 변경되어 당행 약관에 반영</p> <p>개정 시행일 추가</p>
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	제 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70%													
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<b>초과하는 경우</b>	제 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60%													
<b>&lt;신설&gt;</b>	<b>&lt;신설&gt;</b>													
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	제 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70%													
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<b>초과하고 20년 이하인 경우</b>	제 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60%													
<b>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</b>	<b>제 2호 나목에서 계산한 세액의 50%</b>													

